

공정거래협약(대규모유통업) 시스템 구축 결과 보고



공정경쟁연합회
FAIR COMPETITION FEDERATION

목 차

- I. 공정거래협약 구축 개요
- II. 세부 업무 수행 내용
- III. 협약이행 및 평가 절차
- IV. 유통분야 협약 주요평가 기준
- V. 타사 우수사례
- VI. 성과공유제
- VII. 상생누리(상생협력플랫폼)

I. 공정거래협약 구축 개요

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**공정거래 협약 시스템 구축**

소요 기간

· (6개월 소요)

구축 방법

Step 1

[Kick-off]

- 평가지표 설명
- 자료 요청
- 협약구축 가이드 및 체크항목 제공

Step 2

[자료분석]

- 기업 현황 파악
- 사전진단
- 협약업체 선정

Step 3

[추진]

- 전담팀 구성
- 이행계획서 작성
- 협약 체결
- 사내 시스템 구축 및 실행

Step 4

[실행점검]

- 개선활동 검토
- 계약공정성확보
- 범위반 예방
- 상생협력
- 지원체계

Step 5

[완료보고]

- 최종 보고
- 타사 Best practice제안

진행

· 주관 : 공정경쟁연합회(2인)

II. 세부 업무 수행 내용

주요 항목	내용
1. 조직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반성장위원회(내부심의위원회) ● 동반성장전담조직
2. 표준협약서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협약체결업체 리스트 점검 ● 표준협약서 내용 검토 ● 공정위 제출 및 승인
3. [연간]이행 계획안 마련 - 상생협력지원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반성장추진 정책 마련 ● 표준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연간 운영계획안을 마련 ● 타사사례 제안
4. 협약 체결 및 협약식 진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납품업체와 협약식 진행
5. 협력업체 사이트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협력업체를 위한 전용 사이트 구축 - 주요 정보 등을 게시
6. 4대 실천 가이드라인 사내 규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가이드라인에 따른 입증자료 마련 - 내부 보고자료 및 기안
7. 계약의 공정성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업종별 표준 계약서 마련 ● 표준계약서 및 특약의 독소조항 검토 ● 4대 실천가이드 라인에 따른 운영 프로세스 구축 및 점검
8.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CP와 관련한 프로세스 구축 및 점검

III. 협약이행 및 평가 절차

협약 이행 및 평가 절차

협약체결 및 이행

- 협약이행에 앞서 협력업체에게 자율적 공정거래 준수 시스템 구축 및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제시, 1년 동안 해당 협약을 이행

평가

- 협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, 공정위는 협약체결 대기기업의 평가 신청에 따라 협약 평가 실시
- 협약체결 대기기업은 공정위에 협약이행 실적 제출
- 공정위는 해당 자료 점검 후 현장 확인, 이행 실적 평가

인센티브 제공

- 공정위는 협약이행 실적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,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(95점 이상), 우수(90점 이상), 양호(85점 이상) 등급부여
-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 제공

IV. 유통분야 협약 주요평가 기준

협약평가 요소

- 공정위는 업종별로 다른 협약평가 기준 적용
- 공정위의 평가는 ①상생협력 지원, ② 계약의 공정성, ③ 법준수 노력, ④ 범위반에 따른 감점 등 4가지 평가 요소에 따라 진행

IV. 유통분야 협약 주요평가 기준

● 계약의 공정성을 위한 사항 규정

- ✓ 구속력 있는 내부기준에 근거, 단순 참고사항, 가이드라인 등이 아닌 실제 준수 의무 부여한 실적 마련
- ✓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지 확인
- ✓ 실제 납품업자 선정 및 거래 개시, 입점 퇴점 등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실적
- ✓ 주요 내용 사규 반영 여부
 - 구속력 있는 내부 기준 전체를 사규에 삽입하였는가?
 - 내부기준에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사항들을 담고 있는가?
 - 내부기준에 대한 개정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는가?
- ✓ 반영된 사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→ 납품업자 등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사규 또는 내부 기준이 공개
- ✓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
- ✓ 실제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, 해당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 후 실적 마련